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파워e단기채증권투자신탁[채권]

2. 주요 변경내용
   1) 종류형 A2 수익증권 신설
   2)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자료 업데이트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16년 11월 10일

4. 대비표

[집합투자규약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	<추가>	**종류A2 BJ474**
제3조 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)	제3항 <추가>	제3항 2. 종류 A2 수익증권 : 납입금액이 500만원 이상이며,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
제10조 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	제2항 <추가>	제2항 2. 종류 A2 수익증권
제39조 (보수)	제3항 <추가>	제3항 [종류A2 수익증권] 1.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486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 3.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2 4.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연 1000분의 0.18
제40조 (판매수수료)	제2항 <추가>	제2항 2. 종류 A2 수익증권 : 납입금액의 0.2% 이내

[투자설명서]
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변 경 전</th><th>변 경 후</th></tr>
<tr><td>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</td><td>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
<종류 A2 신설></td><td>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
종류형 명칭: A2
펀드코드: BJ474</td></tr>
<tr><td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
<종류 A2 신설></td><td>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
종류형 명칭: A2
펀드코드: BJ474</td></tr>
<tr><td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
<추가></td><td>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
2016 년 11 월 10 일
1) 종류형 A2 수익증권 신설
2)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자료 업데이트</td></tr>
<tr><td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가. 책임운용전문인력
(생략)</td><td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가. 책임운용전문인력
(업데이트)</td></tr>
<tr><td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
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
<종류 A2 신설>

나. 종류형 구조
<종류 A2 신설></td><td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
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
종류 A2
납입금액이 500 만원 이상이며,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

나. 종류형 구조<table><tr><th>종류</th><th>선취 판매수수료</th><th>환매 수수료</th><th>총보수</th><th>판매보수</th></tr><tr><td>A2</td><td>납입금액의 0.2%이내</td><td>없음</td><td>연 0.0966%</td><td>연 0.0100%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tr><td></td><td>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
다. 기타 제한 사항
(1)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
(생략) 제 1 항제 1 호 전단에 따라 (생략)</td><td>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
다. 기타 제한 사항
(1)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
(생략, 현행과 동일) 법제 82 조제 1 호 전단에 따라(생략, 현행과 동일)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
<td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
<td>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
(2) 종류별 가입자격
<종류 A2 신설></td>
<td>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
(2) 종류별 가입자격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가입자격</th></tr>
<tr><td>종류 A2</td><td>납입금액이 500 만원 이상이며,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</td></tr>
</table>
</td>
</tr>
<tr>
<td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
<td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
<종류 A2 신설>

주) 판매수수료는 판매회사가 납입금액의 0.10%이내에서 수수료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, 판매회사별 수수료율은 집합투자업자,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될 예정입니다.</td>
<td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
<table>
<tr><th rowspan="2">구 분</th><th>지급비율</th></tr>
<tr><th>종류 A2</th></tr>
<tr><td>선취판매수수료</td><td>납입금액의 0.2%이내㈜</td></tr>
<tr><td>후취판매수수료</td><td>해당사항 없음</td></tr>
<tr><td>환매수수료</td><td>환매수수료 없음</td></tr>
</table>

주) 판매수수료는 판매회사가 종류 A는 납입금액의 0.10%이내, 종류 A2 는 납입금액의 0.20%이내에서 수수료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, 판매회사별 수수료율은 집합투자업자,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될 예정입니다.</td>
</tr>
</table>

<table>
<tr>
<td></td>
<td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
<종류 A2 신설></td>
<td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
<table>
<tr><th rowspan="2">구분</th><th>지급비율(연간, %)</th></tr>
<tr><th>종류 A2</th></tr>
<tr><td>집합투자업자보수</td><td>0.0486%</td></tr>
<tr><td>판매회사보수</td><td>0.0100%</td></tr>
<tr><td>신탁업자보수</td><td>0.0200%</td></tr>
<tr><td>일반사무관리보수</td><td>0.0180%</td></tr>
<tr><td>보수합계</td><td>0.0966%</td></tr>
<tr><td>기타비용</td><td>실비</td></tr>
<tr><td>총보수 및 비용</td><td>0.0966%</td></tr>
<tr><td>증권거래비용</td><td>실비</td></tr>
</table>
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
<종류 A2 신설></td>
<td>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1년후</th><th>3년후</th><th>5년후</th><th>10년후</th></tr>
<tr><td>종류 A2</td><td>30</td><td>51</td><td>75</td><td>144</td></tr>
</table>
</td>
</tr>
<tr>
<td>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</td>
<td>1.재무정보
(생략)

2.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
(생략)

3.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(세전기준)
(생략)</td>
<td>1.재무정보
(업데이트)

2.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
(업데이트)

3.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(세전기준)
(업데이트)</td>
</tr>
<tr>
<td>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</td>
<td>1.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
라. 운용자산규모
(생략)</td>
<td>1.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
라. 운용자산규모
(업데이트)</td>
</tr>
</table>

[간이투자설명서]

	변 경 전	변 경 후
I.집합투자기구의 개요	**보수** **※ 주석사항** · 종류 C-F의 보수 및 비용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	**보수** **※ 주석사항** · 종류 A2, 종류 C-F의 보수 및 비용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**3. 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**3. 운용전문인력** (업데이트)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**4. 투자실적 추이(연도별 수익률)** (생략)	**4. 투자실적 추이(연도별 수익률)** (업데이트)